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**보도참고자료**	(배포) 2019. 1. 10(목)
2019년 1월 10(목) 11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비고	* 공동배포 : 과기정통부, 산업부, 중기벤처부, 금융위	
총괄	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팀	팀장 임홍기, 사무관 김정훈 (044-200-2446, 2415)
정보통신융합법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	과장 이진수, 사무관 조경래, 김광의 (02-2110-2250, 2821, 2834)
산업융합촉진법	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	과장 김대자, 사무관 김종락 (044-203-4510, 4515)
지역특구법	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	과장 성녹영, 사무관 이범선 (042-481-1695, 1609)
금융혁신법	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	과장 송현도, 사무관 박정원 (02-2100-2538, 2531)

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,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.

<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>

- ▸ 규제혁신 5법 중 개별 4법 확정,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기반 구축
- ▸ 1.17일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
- ▸ 2월 중 약 20건의 신청희망 사업 대상 본격 심사 후 규제특례 적용
- ▸ 「신청-심의-실증」 모든 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

□ **이낙연 국무총리**는 1월 10일(목) 오전, 정부세종청사에서 **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**를 주재하고,

○ **1.17일 시행**을 앞둔 **정보통신 분야**와 **산업융합 분야**를 포함하여, **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**을 논의했습니다.

□ 오늘 회의는 그간 **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특별팀(TF)**을 통해 **논의해온 사항**을 **최종 점검**하기 위함으로 **주요내용**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그간의 추진 경과

□ **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·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**는 인식 하에 **'18.3월** 규제 유예(샌드박스) 도입 등을 위한 **규제혁신 5법**이 국회에 **발의**되었습니다.

□ 현재 **4개 법이 국회를 통과***하여, 정보통신융합법·산업융합촉진법은 **1.17일**, 금융혁신법(4.1일)과 지역특구법(4.17일)은 **4월 시행** 예정입니다.

* 행정규제기본법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('18.12.27)

□ 이로써 우리는 규제 유예(샌드박스)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**세계 20여 개 국가와 비교**해 **가장 앞선 제도**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

□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**후속조치**도 **차질 없이 진행 중**입니다.

○ **정보통신융합법**과 **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**은 **내주초 공포** 예정이며, **지역특구법**과 **금융혁신법 하위법령**은 **입법예고 중**입니다.

○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* 및 부처별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**알리고 안내**하기 위한 **설명회**와 **간담회**를 **20차례 이상 진행**했습니다.

* ('18.11.1) 중기중앙회, (7일) 대한상의, (9일) 스타트업포럼, (16일) 벤처기업협회 등

○ 또한, 지난해 말부터 **국무조정실**과 **과기정통부**, **산업부**는 규제 샌드박스 **전용 홈페이지***를 **구축·운영**하고 있으며, **경제단체**와 **기업** 등과의 **현장 소통**을 통해 **사전 수요**도 **파악**하고 있습니다.

* (국무조정실) better.go.kr, (과기정통부) www.sandbox.or.kr, (산업부) sandbox.kiat.or.kr

2.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

□ 규제 유예(샌드박스)는 **신기술·신산업의 육성**과 **국민의 생명·안전** 등 공익적 가치를 **균형있게 고려**하면서, 궁극적으로 **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추구**하는 제도입니다.

□ 우선,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**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**를 도입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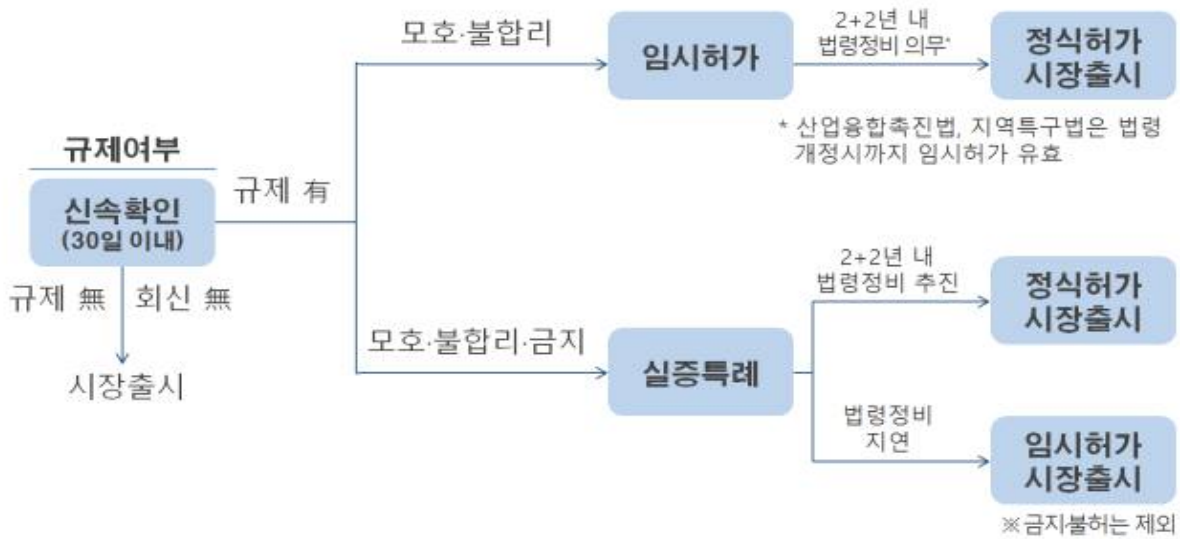
○ 기업이 신기술·신산업 관련 **규제 존재 여부**와 **내용**을 **문의**하고 30일 이내 회신 받는 **규제 신속확인** 제도가 시행됩니다.

*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

○ **안전성**과 **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·신서비스**임에도 불구하고, **관련 규정**이 **모호**하거나 **불합리**하여 **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**에는 **임시허가**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.

○ 또한, **관련 법령**이 **모호**하고 **불합리**하거나, **금지규정** 등으로 신제품·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**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특례도 가능**하게 됩니다.

○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**세 가지 제도간**의 **관계**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
□ 아울러,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**두텁게 보호**하기 위한 **다양한 안전관련 제도**들도 **함께 시행**합니다.

○ 우선, 심의위원회 심사 시 국민의 **생명·안전**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**우려**가 있는 경우에는 **규제특례 부여**를 **제한**합니다.

○ 실증 테스트 **진행과정**을 **지속적으로 점검**하여 **문제가 예상**되거나, **실제 발생**할 경우 **즉시** 규제특례를 **취소**할 수 있습니다.

○ 또한, **사전 책임보험 가입**을 **의무화**하고, 손해 발생 시 **고의·과실이 없음**을 **사업자가 입증**하도록 하는 등 **사후책임**을 **강화**했습니다.

□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**기업**과 **소비자, 규제당국 모두**가 **혜택**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○ **기업**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**기술 혁신**과 **혁신 창업**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**혁신 성장**에도 **기여**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○ **소비자**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**선택권**이 **확대**되고, **정부**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**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**할 수 있습니다.

3. 향후 계획

□ 우선,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각 부처별 **규제특례심의위원회**는 **분기별 1회 이상**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**시행 첫 6개월** 동안에는 성과 창출·제도 안착을 위해 **수시 개최**할 예정입니다.

□ 특히, **법 시행 즉시**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바로 **구성**되어 **운영**될 수 있도록 **사전준비를 신속하게 진행**하겠습니다.

○ **과기정통부**와 **산업부**는 **1.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** 및 **향후 운영계획, 사전 수요조사 결과*** 등을 **발표**하고, **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**할 계획입니다.

*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사전조사 결과 약 20건의 신청희망기업 수요를 이미 확인

○ **금융위**도 법 시행(4.1일)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**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·협의, 2~3월 중 예비심사**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

○ **중기벤처부**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**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**(위원장 : 국무총리)를 **개최**하고자 합니다.

□ 아울러,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**신청-심의-실증**으로 이어지는 모든 **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**하고자 합니다.

○ 부처별로 **사전 상담·컨실팅 전문기관**을 **지정**하여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 나가고,

○ 규제특례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**신청기업이 직접 참석**하여 충분히 **설명**하고, 심의위원과 **토론**하는 小**위원회를 활성화** 합니다.

○ 또한, **소비자 안전**과 **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**를 **지원**하며, **판로 개척 등 연계지원** 방안도 마련됩니다.

*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부처별 '19년 예산 확보 현황
▸ (과기정통부) 28.1억 원, (산업부) 28.9억 원, (금융위) 40억 원 수준
(중기벤처부) 21.5억 원 확보 + 목적예비비 추가 활용 예정

□ 앞으로도, **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특별팀(TF)**을 통해 시행 상황을 **지속 점검**하고, 필요한 경우 제도를 **개선·보완**해 나갈 계획입니다.